



서울신용보증재단

수신자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「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」 취급기준 개정(안)

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창업기업에 대해 보증지원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취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.

- 다 음 -

1. 개정근거

가. 중소기업청의 「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시행지침 변경 알림」
(기업금융과-983, '15.11.09.)

나.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「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취급기준 변경 등」
(보증지원부 2015-31127, '15.11.11.)

2. 주요 개정내용

구 분	변경전	변경후
대상기업	① 대표자가 아래의 창업교육기관 교육을 수료한 기업 - (중진공) 청년창업사관학교 - (창진원) 스마트벤처창업학교, 창업선도대학 과정 중 "창업 아이템 사업화" 과정	① 대표자가 아래의 창업교육기관 교육을 수료한 기업 - (중진공) 청년창업사관학교 - (창진원) 스마트벤처창업학교, 창업선도대학 과정 중 "창업 아이템 사업화" 과정, 창업맞춤형 사업화 과정
보증상대처	기업은행, 농협은행, 우리은행, 신한은행	기업은행, 농협은행, 우리은행, 신한은행, KB국민은행, KEB하나은행

3. 시행일 : 2015년 11월 12일(목) (신청서 접수일 기준)

- 붙임 : 1. 「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」 취급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.
2. 「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」 취급기준 개정前 전문 1부.
3. 「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」 취급기준 개정後 전문 1부. 끝.

★과장

팀장

부장

이사

협조자 전산지원부장

전략기획실장

시행 보증지원부-603 (2015.11.23.) 접수 ()

우 0413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68 서울신용보증재단 17층 / <http://www.seoulshinbo.co.kr>
전화 / 02-2174-5212 /전송 02-3278-8117 / pym1222@seoulshinbo.co.kr / 공개